

『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4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4월 21일

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, 체육활동을 장려·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,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(안 제3조)

- 체육진흥사업의 종류(안 제4조)
 -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, 체육대회 개최,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·지원,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
 -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·외 체육교류
 -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
 -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체육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,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(안 제5조)
-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(안 제6조)
-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 지급(안 제7조)
-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, 제8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29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2007. 4. 11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9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, 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
- 안 제4조 체육진흥 사업의 종류는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, 체육대회 개최,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등 7개 사업으로 구분하고
-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재정적 지원, 위탁운영, 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-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시책 등 체육진흥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이 “공직선거법”의 관련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시단위 및 읍면동 단위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를 연중개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